

#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

## 일부개정예규안

### 1. 개정이유

- 2020. 8. 5.부터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상의 전자출생신고 관련 규정 일부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전자출생신고의 처리권한을 명시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
-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하여 전자출생신고를 수리함을 명시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
- 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
- 관할 아닌 곳으로 접수된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할 기준을 정함(안 제5조의3 신설)

### 3.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생신고는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, 읍·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·면의 장이 처리한다.

③ 제2항에 의해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전자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하여 수리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 (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) ① 동장은 전자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
1. 동장이 접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2. 신고가 부적법하여 제7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출력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.

②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출생 신고를 처리한다.

1. 신고서류의 접수: 송부받은 신고서류를 다시 접수하되,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시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.

2.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: 신고일에는 해당 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, 송부일에는 시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, 송부자는 동장을 각 기록한다.

제5조의3 (잘못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) ① 전자출생신고서류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권한 있는 읍·면·동의 장이 아닌 다른 읍·면·동의 장에게 접수된 경우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읍·면·동의 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하고, 전자출생신고서류를 권한 있는 읍·면·동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한 읍·면·동의 장은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출력한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. 이때 권한 있는 읍·면·동의 장에게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송부한 읍·면·동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전자신고 처리관서) (생략)	제4조 (전자신고 처리관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생신고는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, 읍·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·면의 장이 처리한다.
<신설>	③ 제2항에 의해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전자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하여 수리한다.
<신설>	제5조의2 (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) ① 동장은 전자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1. 동장이 접수하여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 2. 신고가 부적법하여 제7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출력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.

<신 설>

②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한다.

1. 신고서류의 접수: 송부받은 신고서류를 다시 접수하되,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시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.

2.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: 신고일에는 해당 동에서 신고서류를 접수한 날을, 송부일에는 시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, 송부자는 동장을 각 기록한다.

제5조의3 (잘못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) ① 전자출생신고서류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권한 있는 읍·면·동의 장이 아닌 다른 읍·면·동의 장에게 접수된 경우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읍·면·동의 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하고, 전자출생신고서류를 권한 있는 읍·면·동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한 읍·면·동의 장은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출력한 후 불수리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. 이때

권한 있는 읍·면·동의 장에게 전자  
출생신고서류를 송부한 읍·면·동의  
장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  
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-1327